

변경대비표

[신탁계약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필승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 2021 년 4 월 2 일
3. 정정사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 (생략) ④ <신설>	<p>① ~ ③ (현행과 동일)</p> <p>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한다.</p> <p>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p> <p>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p>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필승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 2021 년 4 월 2 일
3. 정정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자료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 추이	-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5. 운용전문인력	-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작성기준일 기준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5부. 1. (3) 수익자총회 결의 사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탁계약서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일로</u>

		<p><u>역산하여 365 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 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한다.</u></p> <p>2. <u>보상기간: 365 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u></p> <p>3. <u>지급시기: 변경일 전일</u></p>
--	--	---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필승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 2021 년 4 월 2 일
3. 정정사유: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 갱신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자료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 추이	-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